

영등포구의회
제12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7. 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발의일 : 2007년 6월 25일

2 제안이유

- 영등포구민의 귀감이 되는 구민 표창 규칙 및 규정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상의 권위와 영예를 제고 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구민상은 3년 이상 표창은 1년 이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나 소재하는 기업체(대표) 및 단체(원)로서 각 분야에서 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규정 (안 제2조제1, 2항)
- 구민상 10개 부문으로 표창은 3종으로 한다. (안 제3조제1, 2항)
- 구민상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표창은 구정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자로 한다. (안 제5조제1, 2항)
-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함을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한다. (안 제6조제1, 제2항)
-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안 제8조, 제14조)

4**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200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7.6.7~6.18(11일 간)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 본 조례안은 종전에 「영등포구 구민상 규칙」으로 운영하던 모범 구민 포상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특별한 공로와 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주민과 단체를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단체로 하여금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한 시상에 관한 조례안으로 종전 보다는 포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포상 제도의 의미는 행정기관의 장이 구민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권위주의의 의미보다는 주민의 뜻을 모아 모범주민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은 가능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7. 6

보고자 : 김 완 섭